

## ◎ 중소기업벤처기업부공고제2023-44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9416호, 2023. 5. 16., 일부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

#### 2. 주요내용

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 설정(안 제11조의14)

- 1)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을 준용하여 규정
- 2)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필요한 누적 투자금액 및 마지막 투자금액은 각각 100억원, 50억원으로 설정

나. 대기업 집단 포함 시 보통주 전환 규정(안 제11조의15)

-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규정
- 2)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시 주주 전원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

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변경 보고 시 보고사항(보고서,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을 규정하고,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16)

라. 행정권한 및 절차 규정(안 제11조의17, 안 제22조)

- 1)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직권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준용
- 2) 복수의결권주식 보고·변경보고 지연 등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별표3】**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림로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전자우편 : [nnnnn@korea.kr](mailto:nnnnn@korea.kr)
- 팩스 : 044-204-7709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전화 (044) 204-7706, 7708, 팩스 (044) 204-7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4부터 제11조의16까지를 각각 제11조의18부터 제11조의20까지로 하고, 제11조의14부터 제11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 제16조의11제5항에 따른 창업주와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때, 특수관계인의 여부는 투자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억 원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 원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11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하려는 창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납입하고자 하는 보통주식의 수량, 납입기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납입의뢰서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제공할 것
2. 제1호에 따른 납입기일에 주권의 인도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행

## 할 것

제11조의15(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① 법 제16조의1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를 의미한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주주 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 「상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12제1항 각 호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일자와 전환된 수량

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사유

2. 법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와 발행수량

나.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되어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이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뜻

제11조의16(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① 법 제16조의14제1항 전단

에서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11제2항 각 호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사항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 및 발행수량

② 법 제16조의1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의 변경 사항(법 제16조의11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 및 발행수량
4.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에 관한 사항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변경보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3. 주주명부

④ 법 제16조의14제2항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변경보고 및 제4항에 따른 공시의 시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11조의17(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① 법 제16조의16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6조의16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상호, 주소 및 대표자 성명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11조의18(중전의 제11조의14) 제3항제2호 중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신고에 관한 사항
- 제19조제6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신고 시스템의 운영
  4.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 보고 시스템의 운영
-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과태료)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 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6조의14 제1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		
1) 보고나 변경보고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보고나 변경보고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
3) 보고나 변경보고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0	
나. 법 제16조의14 제1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	500	
다. 법 제16조의14 제2항에 따른 비치나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항		
1) 비치나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비치나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
3) 비치나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제11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u> <u>행)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제1</u> <u>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 제16</u> <u>조의11제5항에 따른 창업주와</u> <u>「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u> <u>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u> <u>말한다. 이 때, 특수관계인의 여</u> <u>부는 투자할 당시를 기준으로</u> <u>판단한다.</u></p> <p><u>②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u> <u>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금액”이란 100억 원을 말한다.</u></p> <p><u>③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후</u> <u>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금액”이란 50억 원을 말한다.</u></p> <p><u>④ 법 제16조의11제8항에 따라</u> <u>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u> <u>에 대한 납입을 하려는 창업주</u> <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u> <u>여야 한다.</u></p> <p><u>1. 납입하고자 하는 보통주식의</u> <u>수량, 납입기일 등의 내용이</u> <u>포함된 납입의뢰서를 주식회</u></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사인 벤처기업에 제공할 것</p> <p>2. 제1호에 따른 납입기일에 주권의 인도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p> <p>제11조의15(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① 법 제16조의1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를 의미한다.</p> <p>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주주 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 「상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방</p>

현행	개정안
<p><u>&lt;신 설&gt;</u></p>	<p><u>법에 따른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u></p> <p>1. <u>법 제16조의12제1항 각 호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u></p> <p>가. <u>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일자와 전환된 수량</u></p> <p>나. <u>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사유</u></p> <p>2. <u>법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u></p> <p>가. <u>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와 발행수량</u></p> <p>나. <u>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되어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이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뜻</u></p> <p><u>제11조의16(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① 법 제16조의14제1항 전단에서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p>

현행	개정안
	<p>1. <u>법 제16조의11제2항 각 호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사항</u></p> <p>2. <u>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u></p> <p>3. <u>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 및 발행수량</u></p> <p>② <u>법 제16조의1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p> <p>1. <u>정관의 변경 사항(법 제16조의11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u></p> <p>2. <u>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u></p> <p>3. <u>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 및 발행수량</u></p> <p>4. <u>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에 관한 사항</u></p> <p>③ <u>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변경보고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u></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u>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1. 정관</p> <p>2. <u>주주총회 의사록</u></p> <p>3. <u>주주명부</u></p> <p>④ <u>법 제16조의14제2항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p> <p>⑤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변경보고 및 제4항에 따른 공시의 시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u></p> <p><u>제11조의17(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① 법 제16조의16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한다.</u></p> <p>② <u>법 제16조의16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p>

현행	개정안
<p><u>제11조의14</u>(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①·② (생략)</p> <p>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p> <p>1. (생략)</p> <p>2. 「<u>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p>	<p><u>2. 피신고인의 상호, 주소 및 대표자 성명</u></p> <p><u>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u></p> <p><u>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u></p> <p><u>제11조의18</u>(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u>」 제2조제1호----- ----- --</p>
<p><u>제11조의15·제11조의16</u> (생략)</p> <p>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p> <p>&lt;신설&gt;</p>	<p><u>제11조의19·제11조의20</u> (현행 제11조의15 및 제11조의16과 같음)</p> <p>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 ----- ----- -----.</p> <p>1. <u>법 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u></p>

현행	개정안
<p>1. (생략)</p> <p>3. (생략)</p> <p>②·③ 삭제</p> <p>④ (생략)</p> <p>⑤ 삭제</p> <p>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 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위탁한다.</p> <p>1.·2.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u>수선택권 신고에 관한 사항</u></p> <p>2. (현행 제1호와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⑥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법 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신고 시스템의 운영</u></p> <p>4. <u>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 보고 시스템의 운영</u></p> <p><u>제22조(과태료)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u></p>